

제400회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20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2)
5.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2)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9)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1)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1)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8)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5)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3)
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1)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0)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5)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9)
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3)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7)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4)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1)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6)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7)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8)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2)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4)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3)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3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6)
3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5)
3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3)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1)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1)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8)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4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4)
4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1)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5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5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3)
5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9)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5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9)
5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7)
5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8)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9)
6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6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2)
6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4)
6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1)
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3)

6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
7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5)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3)
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
7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6)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2)
7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0)
7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5)
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79.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4)
8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8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8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1)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8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8)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9)
8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9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1)
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1)
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7)
9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4)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3)
9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6)
9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3)
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5)
9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3)
9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6)
1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1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7)
10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
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1)
1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2)

1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3)
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
1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1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
1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1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7)
1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9)
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8)
1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9)
1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3)
120.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1)
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5)
1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6)
1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7)
1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7)
1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7)
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9)
1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0)
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2)
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7)
1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5)
13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4)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3)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2)
1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14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9)
141.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2)

142.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9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2) 9
5.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2) 9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9) 9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1) 9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1) 9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8) 9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5) 9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10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 10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10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 10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 10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10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3) 10
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 10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1) 10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10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0) 10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5) ... 10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9) 10
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3) ... 10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7) 10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4) ... 10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1) ...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6) ... 10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7) ... 10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8) 10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2) ... 10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4) ... 10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3) 10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10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	10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10
3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6)	10
3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325)	10
3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3)	10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1)	10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1) ..	10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	10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10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8)	10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10
4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4)	10
4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	10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10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1) ..	10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10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11
5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11
5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3)	11
5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	11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9) ..	11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11
5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9)	11
5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7)	11
5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8)	11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9)	11
6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007)	11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11
6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11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2) ..	11
6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4) ..	11
6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1)	11
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	11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3) ..	11
6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142)	11
7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5)	11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3)	11
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331)	11
7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6)	11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2)	11
7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0)	11
7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405)	11
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11
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11
79.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11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4) ..	11
8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	11
8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11
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11
8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1)	11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11
8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8)	11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9) ..	11
8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11
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11
9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1)	11
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1)	11
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7)	12
9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4)	12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3)	12
9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6)	12
9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3)	12
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5)	12
9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3)	12
9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6)	12
1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12
1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7) ..	12
10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	12
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1)	12
1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2) ..	12
1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3) ..	12
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12
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 ..	12
1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12
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12
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	12

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12
1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	12
1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12
1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7)	12
1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9)	12
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12
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8)	12
1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9)	12
1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3)	12
120.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1)	12
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5)	12
1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6)	12
1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7)	12
1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7)	12
1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12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7)	12
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9)	12
1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0)	12
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2)	13
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7)	13
1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13
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5)	13
13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13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4)	13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13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13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3)	13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2)	13
1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13
14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9)	13
141.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2)	13
142.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26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백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백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등 7개의 국가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37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총 45개의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전체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9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만 950건입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자료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

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중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에는 각 기관 소속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 280명으로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보직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간사 위원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 날짜를 따로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2)

5.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2)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9)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1)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1)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8)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

- 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5)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181)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267)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283)
 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1)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950)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5)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9)
 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3)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237)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4)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1)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6)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7)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638)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2)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4)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3)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96)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3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6)
 3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5)
 3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3)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1)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1)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67)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8)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34)
 4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4)
 4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567)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1)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860)
5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5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3)
5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9)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5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9)
5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7)
5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68)
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9)
6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007)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021)
6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2)
6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4)
6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1)
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3)
6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42)
7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5)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3)
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31)
7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6)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382)
7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0)
7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05)
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439)
79.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464)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4)
8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8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564)
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8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1)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674)
8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678)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059)
8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9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1)
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81)

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7)
9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4)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3)
9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6)
9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3)
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5)
9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3)
9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6)
1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1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7)
10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
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1)
1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2)
1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3)
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
1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1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
1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1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7)
1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9)
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8)
1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9)
1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3)
120.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1)
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5)
1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6)
1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7)
1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7)
1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7)
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9)
1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430)

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432)

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7)

1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5)

13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4)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3)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2)

1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14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9)

141.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2)

(10시13분)

○위원장 백혜련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1항까지 이상 138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액 등 관련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고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췌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장성 높은 벤처·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신설하고 운용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혁신 기업은 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마련하는 새로운 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유망한 비상장기업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운용하고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 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제대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보다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판결문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재 의원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희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2022년 6월 16일 본 의원 외 15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심각해지는 청년층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33.21배에 비해 더 심화된 수치입

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자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 지원이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개별 법률에 나뉘어져 있어 총괄적인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원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층 자산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자산격차를 완화하고 향후 미래 세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59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여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저소득 빈곤 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34항입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을 매도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주요주주의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의 자유와 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대상 및 처분 제한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의사일정 제46항입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약부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물류창고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화재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으나 물류창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 의사일정 제56항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의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선불충전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허용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이나 선불충전금 일부에 대한 직접 운용이 금지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와 선불업자의 운용상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김영호 의원, 권칠승 의원, 김용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자금인출형·교부형 사기를 포함하고 범죄수익 비례 벌금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금인출형·교부형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계좌이체·송금형 사기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환급제도 등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4쪽, 의사일정 제74항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

방은행 인가 시 자본금 요건을 일반은행과 같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과 자본금 상향의 현실성,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 및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의사일정 제141항입니다.

강예정이 청원하고 이명수 의원이 소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관련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입은 피해의 구제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투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보상이 필요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24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요약본 1쪽, 의사일정 제9항 송재호 의원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 및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해당 상품·상표 노출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 기만 가능성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고지 의무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소액의 대가나 협찬을 받고 고지 없이 추천하는 경우에도 제재 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3쪽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조수진 의원안은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업자가 물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부품을 기간 내 교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요약 보고서 9쪽부터입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의사일정 제89항 이정문 의원안은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편 구조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중 강민정 의원안은, 요약본 11쪽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하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스스로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보상 내역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할 경우 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33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건, 그다음 사참위 소관 1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병욱 의원, 윤주경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각 개별법상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에 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최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폐지하여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가구원의 범위의 경우 현역군인 등 제외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지원액 하한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수급자의 장애·고령 등에 따른 부양의무자 부담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사일정 116항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가보훈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를 근거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검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 신체검사 중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간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이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 재판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1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법 적용 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사실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요청은 그 자료의 생산 기관인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을 신설하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책임 한도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보주체가 받은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36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개선 권고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요건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을 법안심사제1소위 및 제2

소위, 청원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지만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우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으니 이용우 위원님, 그다음에 최승재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먼저 하세요.

○오기형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오기형 위원님 먼저 하시겠지요?

오기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현안이 좀 나왔습니다, 갑자기. 산업은행의 여러 가지 영업자산, 거래관계를 시중은행에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니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제보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로도 제보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담당 사무관 이름도 나오고 그 사무관이 보고했던 과장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이 이야기를 하고 산업은행에서는 여러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그 협의했던 내용들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업은행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규모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말쯤에 기재부에서 이야기되고 그리고 7월 말, 8월 초부터 금융위 담당 사무관이 이것을 8월 중순까지 검토하고 그리고 8월 23일

전후로 해서 산업은행에 직접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또 이전되면서 논의가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김주영 의원실에서 입수한 산은의 영업자산 이관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 시나리오 내용에 따르면 여러 금액 등을, 그런데 그 금액만 해도 시나리오가 1·2·3 이렇게 있는데 시나리오1 5.3조, 시나리오2 9.7조, 시나리오3 18.3조. 그리고 실제 산업은행 자체 실무진에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영업자산이 243조 7000억인데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 규모가 106조 5000억이라는 겁니다, 106조 5000억. 실제 이 시나리오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은 약 30억 좀 넘는, 34~35억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규모라는 겁니다.

이런 자산 이관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이 혼자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금융위나 기재부가 같이 상의해서 뭔가 추진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간 보기 하다가 또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국가의 주요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중에서는 이 정도의 거래를 하면 영업양도라고 그러니까. 영업양도를 하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고 큰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 특혜 식으로 누구 주고 하면서 부의 이전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의 성과물로서 그 영업 관계가 유지되고 영업선의 수익이 저쪽으로 이전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이, 과장이나 사무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장관 다 알고 이거 논의하면서 또는 강석훈 회장이랑 같이 고민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 이야기 자체가.

세 번째는 이 대상 중에서도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의 우량자산을 이관한다면, 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상장회사지 않습니까? 상장회사의 자산 자체를 국가가 마음대로 이관하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검토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장관이 나 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책임 있는 더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걸 시도했다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을 좀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통상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밑의 실무진부터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성숙이 되면 저희 간부들끼리도 수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간부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을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 없지만 저희 간부들하고 수시로 얘기할 때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기형 위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금융위를 움직이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민간 분야와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타당했지만 또 여건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의 국정과제에서도 국책은행의 기능을 갖다가 민간 분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번 검토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래서 실무진 차원에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융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 사이에서 한 번도 이 건이 어떤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 이따 또 할게요.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최승재 위원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상정 법안 관련 질의로 알고 여야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현안 관련 질의가 되네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최승재 위원** 접니다요. 여기 이쪽이에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최승재 위원** 자동차가 사고 등으로 수리를 하

면 원상복구라는 보험약관 규정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현상이 있지요. 그래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사용 저조하고 자동차 수리 등의 비용을 높게 책정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대체부품 시장이 비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사고 나면 보험료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오늘 상정된 것 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문제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분야 표준약관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등이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고 또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의 표준약관은 금융위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주무부처니까……

○최승재 위원 지난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부분 80% 이하로, 60%대를 기록한 보험사도 등장하고요. 역대 최저 수준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 이득은 엄청 개선되고, 그런데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보험료 인하가 안 된다는 의미 같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원상회복을 명시하면서 원형 부품 사용을 반강제하는 약관 때문에 그래요. 성능 및 품질 검사가 통과된 대체부품이 엄연히 있는데도 원청인 자동차 제조사와 하청업체들이 독과점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거지요. 수리비용이 당연히 증가되지요.

잘 아시겠지만 잠깐 조금 고장 났는데도 원상복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체부품이 있는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다른 외국하고 다르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게 자동차 회사하고 결탁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보험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자동차 보험약관에 대해서 오늘 법률도 올라왔는데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생각하시고.

자동차 제조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순정부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인하 여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보험

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 관련 법이 올라왔기는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꾸준히 계속 불공정약관 개정을 요청하는데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지금 법률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약관을 지도하고 권한을 갖고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사고 나서 자동차 부품 바꾸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부품이 있는데 순정부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쓰게 한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듣고 언론에서도 본 기억은 납니다.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냥 대략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현재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률안 개정안 나온 거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뭔가 해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승재 위원 표준약관 자체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약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위원장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 파트는 제가 깊이 생각한 분야가 아니라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화면은 2017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을 보면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자. 즉 보험업법 제106조제10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상정된 법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같아 보입니다.

○**이용우 위원** 똑같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직접 한도 규제를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7년에는 중점 법률 과제로 해서 제출했다가 법안이 통과도 안 됐고, 지금 제가 보험업계나 이렇게 해서 스탠더드에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금융위는 신중하자.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동일한 법안을 가지고요? 2017년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이 건은 사실 2017년도 법안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관에서……

○**이용우 위원** 헤지 거래를 위해서, 보험회사의 듀레이션(duration)이 길어지기 때문에 헤지하려고 하면 국채 20년·30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미국 재무성 채권을 사서 CRS·IRS를 걸어서 헤지를 하고 있으면 파생상품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줄여 주자는 겁니다.

동일한 법안을 가지고, 금융위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이용우 위원** 그리고 앞에 34호로 오늘 상정된 법에 대한 의견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들을 받았던 임원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준 적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이용우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내놔던 법이 주요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는 매각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그 계획대로 한다면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금융위도 지난 추석 연휴 다음 날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그 취지로 발표한 것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취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답변이 뭘 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 사안이 취지가 같고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면 심의를 빨리해서 빠르게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인데.

○**이용우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담당 과장이 ‘저희는 법안을 발의할 겁니다’.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실제로 필요한 겁니까?

정부가 법안을 한번 발의하려고 그러면 규제개혁 심의, 차관회의 등등 해서 최소한 5~6개월, 길면 1년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상정됐는데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금융위의 태도는 지금 뭐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그 파트는 위원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용우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이 불편하게 느끼는 포인트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으니까……

○**이용우 위원** 그리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산업은행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관별로 8월 말까지 경합하는 부분을 해서 주무부처에 제출하라.

위원장님, 위원장님 모르고 계셨다고 했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제출하는 걸 주무 부처장이 모르고 간다는 게 패스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실무단에서는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항상 그걸 실무진끼리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진척이 되는 과정인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아마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국장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그래서 홀드돼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사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전사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경합하는 부분과 정책금융에서 정책금융과 산업을 나눈 적이 있었지요? 그러다 다시 합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공문을 내세우는 행위, 이게 월권입니다. 게다가 은행업법상으로 보면 은행업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부실자산 매각할 경우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자산을 넘긴다.

그 우량자산을 넘길 때 그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채 주주라고 해서 경영진에 그런 지시를 하는 것도 은행업법 위반 맞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무진 간의 의견이 교환되는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우 위원 실무진 간에 의견이 교환되는데, 제가 8월 초에 자산관리공사 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보고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안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상장회사예요. 주주가 있고 일반주주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금융 당국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기재부가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은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하고 막아야 될 조직이 바이패스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아까 화면에 나온 공문은 사실 제가 보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어쨌든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 공문의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만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정책사항으로서 협

의한 내용인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이 정말로 실행되면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금융회사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재무적으로 살아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별로 썩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한테 보고되거나 우리 간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실무진 차원에서의 얘기고, 제가 내부적으로도 왜 이걸 했냐라고 얘기 듣고 제가 일한 경험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그 역할에 대해서, 시대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구나 이번에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정책 기능을 좀 조정해 보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다음에 정보교환 차원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을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언론에 유출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 1분만 질문.....

○위원장 백혜련 먼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나요?

박용진 위원님이요 그리고 송석준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1분만 하고 더 추가질의는 없으신가요?

○오기형 위원 예.

○위원장 백혜련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부터 먼저 1분 하고 박용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 주제가 아마 국감 때도 또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서로 오해를 풀어야 되고 또 앞으로 건설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무관이 이걸 작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사무관은 몇 번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과장까지만 보고됐고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님은 국장까지 해서 거기서 멈췄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말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계속 의심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초안 작성된 것 내지 국장까지 보고된 자료를 다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푸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충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데에서 서로 문제 제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어떤 특혜 시비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오 위원님, 저는 100%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금융위 차원에서 한 곳도 감추는 거나 이런 거 없고, 이것은 정말 제가 한 번도 보고받은 거 없고 간부들도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고 정말 실무진 차원에서 흘러 나간 얘기다. 그런데 다만 생각이 조금 거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실무자고 그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는 아이디어 차원이고 이 포함된 법률적인 어떤 이슈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서 논의가 되고 검토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자료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주현** 저희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전당대회 치르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상임위에 잘 참여를 안 해서요, 보훈처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언론 인터뷰나 이런 등등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요청이 있었는지는 제가 따로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광복회 관련 특정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지요. 예하 산하기관과 단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잡으

셔야지요.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복회 불법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근거가 뭐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광복회장의 탈법 사례는……

○**박용진 위원** 그건 잘 알고요. 근거요. 정권 비호의 근거가 뭐예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법 사례는 아시다시피 국회 또 채용 비리 이런 게 망라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카페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그 감독부서인데 그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광복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채용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감독부서인 국가보훈처나, 제가 알기로 기재부에서도 채용이 원래 12명인데 13명을 더 증원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또 광복회장이 나서서 그걸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박용진 위원** 그게 정권 차원의 비리 비호의 근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박용진 위원** 처장님! 지금 이 자리가, 처장님의 자리가 국민들 눈높이 평가하는 분이에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근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국민 눈높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국민들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게 근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지요.

○**박용진 위원** 전 정권의 비호의 근거가 그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광복회장이 그 정도 일탈을 하는데 국가기관도 제지를 못 하고……

○박용진 위원 그것은 혼자서 유추시잖아요.

처장님, 지금 혼자서 유추와 근거잖아요. 수사 기관이세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걸로……

○박용진 위원 고발해 가지고 확인하세요, 그런 것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아마……

○박용진 위원 아니, 무슨 보훈처장이 정치를 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검찰에서 어차피 수사를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건데……

○박용진 위원 지금 말씀은요, 보훈처장이 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세요. 정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저는 정치 한 적이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셔서 가지고, 지금 보훈처장이 국회에 예산 신청하고 사업 신청하고 국가 보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을 겨냥해서 또 근거도 없이 이전 정부가 비호했다는 등의 막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거……

○박용진 위원 자기 일 제대로 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언론 나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처음 정무위에 왔는데, 여기 윤주경 위원님도 그때 보셨을 거예요.

아니, 박승춘 보훈처장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갔고 그때 보훈사업 뭐가 된 게 있어요? 지금 박승춘 투(two)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박승춘 처장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박용진 위원 아니, 뭐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왜 박승춘……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유추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유추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위원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근거를 찾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왜 보훈처장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정치를 하고 오히려 국회를 정쟁 대립의 장으로 본인이 끌고 가려고 그러시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차분차분히 보훈처장 일 잘 하시면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왜 쓸데없이 나서서 가지고 여야 정쟁으로 몰고 나가려고 그 한가운데 서서, 박승춘 장관이 받았던 주목을 다시 받고 싶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때 여야 다 피곤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보훈에 대해서 여야 구별 없이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유념은 하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진 위원 그러지 마시라고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무슨 장관이 페이스북에다 글 써 갖고 그렇게 하고. 인터뷰 또 연달아 두 달간에 걸쳐서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안 됩니까? 제가 정파적으로……

○박용진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야당 위원이라도 적절하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셔야지 말이야.

○위원장 백혜련 이제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받아들이니다. 받아들이니다마는 또 국가보훈처장으로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박구연 1차장님, 어제 총리님께서 영빈관 신축계획 예산과 관련해서 잘 모르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총리님께서서는 설명을 드리실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검토하고 요청하고 하는 이런 거 통상적인 절차가 있고 그런 개개의 세별 사항까지 총리께서 사전에 보고받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무조정실의 존재 이유가 뭐니까?

정부 부처 간의 중요한 이런 국가적인 의제 또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님, 대통령님이 아실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런 업무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지난 정부 책사분이 말이지, 총리님이 국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것도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더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지금.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항목이 600조가 넘는데 개별 사업들 하나하나를 총리님께서 사전에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었다 그런 맥락이시지, 일단 이게 이슈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다만 이미 대통령께서 이 건은 국민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공감대가 덜 되어 있으니 좀 더 익혀서 가시자 이런 취지에서 철회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무조정실장님은 아셨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슈가 된 직후부터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진작부터 알았어야지요. 몰랐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고 직무유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 총리실이 여러 가지를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개별 부서에 있는 소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자, 이것 보세요.

지금 영빈관 얘기가 왜 나오니까? 영빈관이 무슨 대통령 개인 사적 공간입니까? 영빈관은 국가원수로서 국민 등 국가 외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외빈을 초청하고 외빈과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 영빈관이 제대로 격을 못 갖추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국가원수로서 대외 귀빈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공간을 정부 내부에서 알아서 챙기고 제대로 기획을 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먼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쪽지 예산입니까? 지금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아무도 모르게 쪽지로 들어가는 신규 예산이요?

쪽지 예산 아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에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송석준 위원 일단 예산편성을 위한 정부안에 정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 과정을 다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부 내부의 과정을?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로 들어가셨다면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지금 국정 수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께 약속드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본인이 불편과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도어스테핑 원치 않게 또 워낙에 매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몸소 감내하면서 국정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그걸 잘 서포트를 해야지요.

영빈관 문제는 먼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거 정부에 정식으로 들어간 예산을 갖다가 마치 누가 개인적으로 끼워 넣은 것처럼 쪽지 예산 같은 국민적인 오해를 일으킨다는 것, 이것 총리님을 모시는 국무조정실 또 그걸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이미 여러 번, 어제 총리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통령께서 꼭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용도는 아니고 그 외에 총리님이나 각부 장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입법부나 사법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무적인 용도로 원래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국민들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이번은 좀 자제를 하고 또 논의를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무1차장님,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무1차장님도 영빈관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인지했다는 거지요?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것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아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산서에 개별 항목이 반영돼 있는지 여부는 실제 심의 단계에서 제가 직접 인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혜련 그러니까 국무1차장님도 언론 보도 보고 안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고 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다, 국무1차장도.

그리고 지금 소병철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소병철 위원님 하시고 위원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한기정 공정위원장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저는 한 위원장님께 기대했던 말씀이 안 나와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백혜련 위원장님도 적절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장님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또 업무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검증에 필요한 청문자료도 역대급으로 제출을 안 해 주셨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임명권자께서 임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기정 위원장님 오늘 첫 번째 회의니까 이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점이 있었다든지, 하지만 앞으로 공정위원장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하면, 제가 보기에 한 30초도 안 걸렸을 텐데.

이 법안이 지금 중요한 법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1년, 2년 아니면 4~5년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실 분이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각오나 아니면 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이, 이것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속담이 생각나요.

위원장님,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옆구리 찢어서 답변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좀 무겁습니다마는 한번 소회를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제출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나 법안을 죽 봐도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데요.

지금 맨 뒤에 과태료에 보면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 법안으로 봤을 때는 감사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 조항이 있는 거겠지요? 그것 이따가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소병철 위원 두 번째, 국무1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소병철 위원 지금 영빈관 예산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대정부질문과 언론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 항목이 기금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그 보도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것을 찾아내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각각 있을 수 있지만 왜 당당하게 이 항목을 표시를 못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이따 답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소병철 위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니까 몰랐다, 실무자선에서 한 거다. 아니, 그러면 금융위원장은 지금 주된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왜 저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가.

일단 금융위의 신뢰에 손상이 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위의 신뢰에 손상이 가면 지금 정부의 신뢰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해서 몰랐다.

만약에 제가 금융위원장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금융위원회가 신뢰에 손상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 여하를 엄중하고 철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따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소병철 위원 제가 박민식 처장님 검찰에서도 정말 뛰어난 인재로 생각하고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실 분으로 항상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민주당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이 보훈처 업무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잘 모셔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민식 처장님이 언론이나, 아까 페이스북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같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박민식 처장님이 보훈처장님 본연의 일보다는 본인의 정치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염려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오늘 처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셔서 제가 잘못 듣고 있나.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민주당 위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보훈처장님을 비판하는 것이겠습니까?

○위원장 백혜련 소병철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보훈처장으로서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에 숨겼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시고요. 당연히 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서는 다 국회에 제출이 돼서 상임위와 예결위 그다음에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되는 국가 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포함돼서 들어갔다면 그 자체를 숨겼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저희들이 기재부 예산심사를 거쳐서 예산서에 담고 각종 서류에 표기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이것을 비공개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국민들 뜻을 좀 더 헤아리기 위해서 철회를 지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한기정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피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적절히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 따끔한 말씀은 제가 잘 유념하고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항상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 확립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고 현장과도 잘 소통해서 제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할부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거짓 공시행위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해서 대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먼저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어서 의결을 하고 윤창현 위원님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2.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11시17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태양광 대출이 5조 6000억이 집행됐다. 그런데 담보 초과금액이 약 한 1조 5000억이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윤창현 위원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집행이 된 그런 예들도 많고 또 일부 지방은행은 자기 관내에 있지 않은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주기도 하고 하는, 상당히 관행을 벗어난 그런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는 실제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필요하면 금감원에서 조금 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금융위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이게 건전성을 상당히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태양광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져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액수도 꽤 크고.

그래서 이게 태양광만 이렇고 나머지 다 좋다고 그러면 그나마 낫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안 좋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5조나 되는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과거에 윗선에서의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말씀 취지 알겠고요. 이거는 금융감독원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실화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금융위 입장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위 차원에서 어디선가 무슨 전화를 받았단가 하는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는데 그때까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 주셔서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이 문제는,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다만 금감원하고 조금, 검사를 그쪽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국감 때 질문하실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 전까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부당한 압력 같은 게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금융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이게 3일 전에 본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금융위원장이 인지를 못 하고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당연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강민국 위원 아니,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저희

들이 자료를 받아서…… 문제인 정부 출범 후에 2017년부터 22년 7월까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이, 대출이 2조가 넘어요. 지금 2조 4000억이 넘고, 그리고 지금 대출 잔액도 아직 1조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태양광 광풍 물리로 지금 돈으로, 태양광발전 설비가 우리 산하에 깔려 있던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금융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금융감독원에 마치 그것을 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하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강민국 위원 미리 이런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보도자료가 언론으로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 4~5일 전이에요. 태양광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많고 금융의 부실도, 1조 이상이 아직 대출이 남아 있어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금융감독원에 알아보겠다, 조사해 보겠다’. 아니, 이때까지 다른 사모펀드나 등등 금융위원회에서 다 금감원에 해서,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총체적인 관리 감독, 점검 그리고 앞으로 대책 그것 국감 전에까지 좀 마련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국감 때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김주현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오전에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예금보험공사 직원 입사 3일 차 남성 투신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제가 이동하면서 유선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 중에 팩트만 하고, 그분이 일반 정규직원은 아니더라고 간단한 내용만 들어

갔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유명 달리하신 직원분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부터 내부 모럴해저드 지적, 여직원 성추행 이후 합의 중용 논란, 스폰서 검사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사를 해야지 나오겠지만 TF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미스러운,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보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감독기관으로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고 필요한 조치 있으면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사 상황 봐 가면서, 예금보험공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갑질 전수조사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이게 갑질과 관련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갖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만약에 이 자살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권익위에서도 한번 상황 좀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금융위원장님, 제가 아까 몇 분 위원님들 지적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지요.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공기업에 대한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기재부는 그 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과 인력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방만해졌는지 또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다음에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얼마나 줄었는지 효율성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전 정부 5년 동안에 공기업이나 정부의 부채·인력 엄청나게 방만해졌고, 부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는 당연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각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앞장서서 구조조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개혁할 것 개혁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니깐 금융위원장님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그 안건 자체를 제가 보지……

○**윤한홍 위원** 아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재부 지시가 없어도 금융위 산하의 각 공공기관들 방만하게, 부패한 것 다 찾아내서 구조조정하고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거는 정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위원님들 지적한다고 해서 몰랐다, 안 봤다 그러면 그것은 기관장의 자세가 아니지요. 저는 그것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동안에 공기업 부채·인력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것 전부 국민들 세금 아니겠어요? 그것 몰랐다고 그러는 자세가 저는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 해명 비슷하게……

아까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화면에다가 기재부 보고서를 띄워 놓고……

○**윤한홍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송석준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영빈관 같은 게 대통령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국가의 시설인데 총리가 몰랐다 하는 답변 그런 자세도 틀린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업에 대한 개선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예보 사장할 때도 보면 부채 많은 공기업 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기억도 있고, 공기업이 방만 경영이나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은 당

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소병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추가 시간을 1분, 1분씩만 드릴게요.

○**소병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국무차장님, 지난번 질의에서 방 실장님께서, 요새 순천의 시민들이 절규하고 있는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해서, 이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셨어요. 공청회나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듣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국토부하고 의논하신 것 말씀이 오셨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 공청회가 통과의례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절규하는 내용을 정말로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자세로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1차장님, 아까 영빈실 예산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신청하는 소요 제기가 있을 거고 기재부 심사했을 거고 다 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님도 몰랐다 그렇게 판단하셨던 건 아래에서 철저하게 절차를 따라서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였다면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조직 진단과 보고 체계 조사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 나중에 끝날 때 답변해 주시고요.

론스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론스타조사특위, 즉 도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론스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공개 요약본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측 답변은 ‘개인 정보 보호나 소송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된다, 다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론스타하고 적극 접촉한 결과 자신들은 공개하는 데 반대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론스타 관련 자료를, 이번의 ISD의 조정문을 공개해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조사, 국무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론스타 자료 공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내용 중에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숨기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른 맥락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총체적인 보고서 안에는 들어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인지를 했고 또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렸느냐 이 부분을 한다면 제가 몰랐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용우 위원 예산 소요 제기 처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요청했고, 청와대 해당 부서에서 예산 소요 제기를 하지요. 그러면 기재부에 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안을 어떻게 모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그 사안을 제가 몰랐다는 의미이지 정부 내 시스템이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위원장 김주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판정문 공개의 문제는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보면 비밀유지가 있다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 다만 지금 정부는 중재 판정문 공개와 관련해서 론스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판정문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간사님들 간에 9월 27일 화요일 날 13시 30분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에 위원님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송석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부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민국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김희곤	민병덕	박성준
박용진	박재호	백혜련	소병철
송석준	양정숙	오기형	유의동
윤상현	윤영덕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최승재	황운하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희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국무총리비서실장	박성근
국가보훈처	
처장	박민식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보훈예우국장	남궁선

보훈단체협력관	나	치	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기	정
기획조정관	이	순	미
소비자정책국장	남	동	일
기업거래정책국장	송	상	민
심판관리관	안	병	훈
한국소비자원장	장	덕	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	형	배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	주	현
사무처장	이	세	훈
기획조정관	김	동	환
금융정책국장	이	형	주
금융산업국장	신	진	창
금융소비자국장	유	재	훈
자본시장정책관	이	윤	수
구조개선정책관	전	요	섭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	원	목
한국산업은행회장	강	석	훈
중소기업은행전무이사	김	성	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
기획조정실장	임	윤	주
부패방지국장	한	삼	석
심사보호국장	김	기	선
법무담당관	권	기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	종	인
사무처장	최	장	혁
기획조정관	정	두	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황운하·강민정·김두관·김병기·김용민·민형배·이수진·장경태·정필모·최강욱·한준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황운하·강민정·김두관·김병기·김용민·민형배·이수진·장경태·정필모·최강욱·한준호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황운하·강민정·김두관·김병기·김용민·민형배·이수진·장경태·정필모·최강욱·한준호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황운하·강민정·김두관·김병기·김용민·민형배·이수진·장경태·정필모·최강욱·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6일 회부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2. 7. 26. 조오섭·김병기·김원이·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향자·이용빈·이형석·주철현·최종윤 의원 발의)

7월 27일 회부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7. 27. 김희곤·구자근·김영식·김예지·박성민·박대수·백종현·윤재옥·이명수·전봉민·정희용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7. 27. 김희곤·백종현·구자근·이명수·김성원·안병길·하영제·전봉민·송언석·김기현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2022. 7. 27. 이재명·임오경·노웅래·장경태·정일영·황운하·정성호·김병기·박찬대·문진석·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8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2. 7. 28. 전봉민·이종성·안병길·이현승·이주환·정동만·황보승희·서병수·정우택·김희곤 의원 발의)

7월 29일 회부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최승재·서병수·배준영·이종배·서일준·이명수·노용호·박성민·엄태영·조정훈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진선미·김병욱·김병주·민병덕·양정숙·양향자·윤미향·윤준병·이수진(비)·한정애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진선미·김병욱·김병주·민병덕·양정숙·양향자·윤미향·윤준병·이수진(비)·이원욱·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3일 회부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전해철·오영환·김두관·김민철·이인영·송재호·양정숙·이재명·김수홍·최인호 의원 발의)

8월 5일 회부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2. 8. 5. 최기상·기동민·김성환·김정호·박상혁·신정훈·윤후덕·이동주·임호선·장경태·정성호·조웅천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2. 8. 5. 최기상·기동민·김성환·김정호·박상혁·신정훈·윤후덕·이동주·임호선·장경태·정성호·조웅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8. 9. 김희곤·강대식·구자근·김영식·박대수·백종현·안병길·윤두현·전봉민·최준식·홍석준 의원 발의)

8월 10일 회부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2. 8. 10. 김교홍·김수홍·김영주·김홍걸·오영환·박용진·박영순·유동수·장경태·이성만·박찬대·허종식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2. 8. 10. 박성준·강선우·권칠승·김민기·김승원·박정·신정훈·윤재갑·이병훈·이용빈·이형석·정일영·조정식·최인호·한병도·허종식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0. 엄태영·구자근·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성민·이명수·이채익·추경호·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11일 회부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8. 11. 홍석준·지성호·류성걸·김희곤·김태호·윤창현·임병헌·서일준·배준영·김영식·전주혜 의원 발의)

8월 12일 회부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2. 8. 12. 구자근·정우택·최영희·김기현·김선교·金炳旭·임병헌·김예지·김석기·강기윤·최춘식·서범수·정동만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8. 12. 김정호·김경만·김병욱·김성환·김윤덕·박상혁·서동용·신정훈·신현영·어기구·위성곤·윤준병·윤후덕·정준숙·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6일 회부됨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서영교·신정훈·양기대·유정주·윤준병·이개호·이용빈·임오경·전혜숙·최인호·홍정민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8. 17. 정부 제출)

이상 2건 8월 18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정우택·양향자·백종현·정찬민·이인선·송석준·노용호·정희용·구자근·배준영·이주환 의원 발의)

8월 24일 회부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2. 8. 29. 전재수·고영인·김두관·김성환·김정호·신영대·유정주·이원택·이장섭·임종성 의원 발의)

8월 30일 회부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윤재옥·박성민·김희곤·이명수·배준영·유상범·태영호·양금희·김용관·윤창현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윤재옥·박성민·김희곤·이명수·

정우택 · 유상범 · 태영호 · 양금희 · 김용관 · 윤창현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박성준 · 정일영 · 김교홍 · 윤재갑 · 최인호 · 민병덕 · 허종식 · 강준현 · 이용빈 · 최기상 · 신정훈 · 양정숙 · 김민기 · 한병도 · 강민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일 회부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박성준 · 정일영 · 윤재갑 · 민병덕 · 허종식 · 강준현 · 이용빈 · 신정훈 · 양정숙 · 김민기 · 한병도 · 강민정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윤재옥 · 김희곤 · 태영호 · 양금희 · 김용관 · 박형수 · 성일종 · 구자근 · 이용 · 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일 회부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최종윤 · 김영진 · 김태년 · 김홍걸 · 송갑석 · 이수진 · 인재근 · 조오섭 · 한준호 · 홍기원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최종윤 · 김영진 · 김태년 · 김홍걸 · 송갑석 · 이수진 · 인재근 · 조오섭 · 한준호 · 홍기원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최종윤 · 김홍걸 · 조오섭 · 이수진 · 송갑석 · 김영진 · 홍기원 · 김태년 · 인재근 · 한준호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최종윤 · 김홍걸 · 조오섭 · 이수진 · 송갑석 · 김영진 · 홍기원 · 김태년 · 인재근 · 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5일 회부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9. 6. 김희곤 · 강기윤 · 구자근 · 박대수 · 서일준 · 이인선 · 전봉민 · 정우택 · 하영제 · 한기호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이인선 · 윤두현 · 박성민 · 양정숙 · 백종현 · 이종성 · 김선교 · 김석기 · 윤영석 · 지성호 · 임병헌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최승재 · 권명호 · 김선교 · 김성원 · 김학용 · 김형동 · 노용호 · 서범수 · 유경준 · 이명수 · 이인선 · 이종성 · 장동혁 · 조정훈 · 홍석준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8일 회부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2. 9. 14. 이해식 · 김승원 · 김영배 · 김원이 · 박상혁 · 서영교 · 서영석 · 안규백 · 우원식 · 이학영 의원 발의)

9월 15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2. 9. 15. 김두관 · 고민정 · 서동용 ·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 인재근 · 정성호 · 정일영 · 최인호 의원 발의)

9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7. 26. 김정재 · 이종배 · 한무경 · 권성동 · 김태호 · 김석기 · 이용 · 서일준 · 김성원 · 김학용 의원 발의)

7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주호영 · 강대식 ·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 권성동 · 권은희 · 권철승 · 김기현 · 김병기 · 김炳旭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관 · 김정재 · 김태년 · 김태호 · 김학용 · 김형동 · 김희재 · 김희국 · 류성걸 · 박대수 · 박덕흠 · 박성민 · 박정하 · 박형수 · 배현진 · 서정숙 · 소병철 ·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 안규백 · 안철수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 윤상현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이만희 · 이병훈 · 이양수 ·

이용 · 이용호 · 이인선 · 이종성 · 이철규 ·
임병헌 · 임이자 · 장동혁 · 전주혜 · 정운천 ·
정찬민 · 정희용 · 조명희 · 조은희 · 조해진 ·
주철현 · 지성호 · 최승재 · 최연숙 · 최영희 ·
최재형 · 최춘식 ·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 홍석준 의원 발의)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정운천 · 김석기 · 김영식 · 김희곤 ·
노용호 · 박성민 · 성일중 · 송석준 · 이달곤 ·
이용호 · 이종성 · 지성호 · 최춘식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한병도 · 고민정 · 김교홍 · 김민철 ·
김성주 · 김수홍 · 김승원 · 김영배 · 김윤덕 ·
김철민 · 박성준 · 신영대 · 안호영 · 오영환 ·
윤영찬 · 윤준병 · 이원택 · 이해식 · 전용기 ·
천준호 · 허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박상혁 ·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
김희재 · 민형배 · 신영대 · 이동주 · 이정문 ·
임오경 · 장철민 · 정성호 · 진성준 · 최인호 ·
홍성국 · 홍익표 의원 발의)

8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2. 8. 29. 김용관 · 김영식 · 이주환 · 이종성 ·
박성민 · 정찬민 · 서일준 · 하영제 · 권명호 ·
배준영 · 최춘식 · 조수진 · 박대수 · 서범수 ·
김미애 · 노용호 · 박덕흠 의원 발의)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김영식 · 박성민 · 박성중 · 정우택 ·
홍석준 · 김용관 · 박대수 · 김희곤 · 성일중 ·
권성동 · 서일준 의원 발의)

8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이인선 · 박덕흠 · 박성민 · 백종현 ·
하영제 · 金炳旭 · 김희곤 · 김학용 · 임병헌 ·
서일준 · 노용호 · 이철규 · 최연숙 · 윤상현 ·
강기윤 · 박진 · 최영희 · 권명호 · 김미애 ·
최승재 · 한무경 의원 발의)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